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명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978

발의연월일: 2022. 10. 28.

발 의 자:이명수・金炳旭・김상훈

박덕흠 • 백종헌 • 서일준

엄태영 • 유경준 • 전혜숙

조명희 · 태영호 의원

(11일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등에 설립 근거가 있는 전문대학 등의 학교에 대하여는 취득세, 재산세, 지역자원시설세,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을 전액 면제하고 있음.

그런데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라 전공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(이하 "전공대학")의 경우에는 전문대학과 동일하게 교육부장관의 인가로 설립되고, 동등한 학력·학위 등 정규교육과정이 인정될뿐만 아니라 그 운영방식도 전문대학 등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, 설립 근거가「평생교육법」에 있다는 이유로 취득세 및 재산세의 85퍼센트만을 감면받고 등록면허세,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및 종업원분은 감면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등의 차등이 있어 조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전공대학에 대하여도 「초・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등

에 따라 설립되는 전문대학 등 학교와 동일하게 취득세, 재산세, 등록 면허세, 지역자원시설세와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에 대한 면제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(안 제44조제2항 및 제177조의2).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서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공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자(이하 이 항에서 "전공대학"이라 한다)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.
- 1. 전공대학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.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.
 - 가.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
 - 나.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
 - 다.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·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
- 2. 과세기준일 현재 전공대학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)에 대한 재

산세(「지방세법」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) 및 「지방세법」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. 다만,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되지 아니한다.

3. 전공대학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전공대학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(「지방세법」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 및 종업원분. 다만,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.

제177조의2제1항제2호 중 "제6항까지"를 "제6항까지, 제44조제2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전공대학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44조제2항 및 제177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혀 행

개 정 안

제44조(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) ① (생 략)

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로서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 제4항에 따라 전공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(이하 이 항에서 "전공대학"이 라 한다)에 직접 사용하기 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, 과세기준 일 현재 전공대학에 직접 사용 하는 부동산(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)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 를 면제한다.

제44조(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) ① (현행과 같음)

-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로서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 4항에 따라 전공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을 경영하는 자(이하 이 항에서 "전공대학"이라 한다)에 대해서 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 월 31일까지 면제한다.
 - 1. 전공대학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.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정한다.
 - 가.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

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

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
 - 나.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 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

 때 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

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

 다.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

 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

 태에서 매각・증여하거나

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

 오

- 2. 과세기준일 현재 전공대학 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 는 부동산(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 한다)에 대한 재산세(「지방 세법」 제112조에 따른 부과 액을 포함한다) 및 「지방세 법」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. 다만, 수익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 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 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되지 아니한다.
- 3. 전공대학이 그 사업에 직접

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

 등록면허세와 전공대학에 대

③ ~ ④ (생 략)

제177조의2(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)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(지방세 특 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 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「지방세법」에 따른 해당 과 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 면하는 것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 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 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 (「지방세법」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)을 적 용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 주민세 사업소분(「지방세법」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 및 종업원분. 다만,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.

③ ~ ④ (현행과 같음)
제177조의2(지방세 감면 특례의
제한) ① -----

그러하지 아니하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제7조부터 제9조까지, 제11	2
조제1항, 제13조제3항, 제16	
조, 제17조, 제17조의2, 제20	
조제1호, 제29조, 제30조제3	
항, 제33조제2항, 제35조의2,	<u>स</u> ो
제36조, 제41조제1항부터 <u>제</u>	<u>6항까지, 제44조제2항</u>
<u>6항까지</u> , 제50조, 제55조, 제	
57조의2제2항(2020년 12월	
31일까지로 한정한다), 제62	
조, 제63조제2항·제4항, 제66	
조, 제73조, 제74조제1항, 제	
76조제2항, 제77조제2항, 제	
82조, 제84조제1항, 제85조	
의2제1항제4호 및 제92조에	

②・③ (현행과 같음)

따른 감면

②・③ (생 략)